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5. 1. 20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5. 1. 13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4. 1. 16

다. 상 정 일 자 : 제3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94. 1.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주 강 우)

가. 제안이유

'94. 12. 20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는 현재 자치구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본청의 행정조직 : 3국 2실 17과(조례안 제3조 내지 제7조)

◦ 국 :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 실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 과 :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 하부조직 : 실·과 밑에 계를 두고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조례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 자치구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기구 조례운영으로 지방의회가 기구증설에 대한 직접통제와 지역실정에 알맞는 지방조직 운영으로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